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합50742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나황영)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205,452원 및 그 중 283,433,424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7.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7. 9. 접수 제1374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의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원금 2억 9,700만 원, 보증기한 2017. 4. 1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은 위 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4. 20. D은행에게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A은 2019. 7. 27.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에 D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9. 10. 29. 대출원리금 283,433,424원(원금 2억 7,900만 원과 이자 4,433,4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 A, B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772,028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2019. 4. 1. 이후 적용되는 손해금율은 연 8%이다.

마. 한편 피고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7. 9. 접수번호 제137442호로 채권최고액 2억 6,1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4,205,452원(= 보증채무이행금 283,433,424원 + 채권보전비용 772,028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283,433,42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26.까지는 약정이율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9. 10.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피고 B에 대한 구상보증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2016. 4. 14. 체결되었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 점,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9. 7. 5.로부터 불과 20여일 남짓 경과한 후에 2019. 7. 27. 이 사건 대출의 이자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8. 14. 최종 부실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채권 등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9. 10. 29.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바, 이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권자 또는 자신의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렉스턴 차량(F), BMW 차량(G)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0. 5.경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5억 3,300만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9.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그보다는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0. 5.경 피고 B의 렉스턴 차량(F)의 시세는 최대 약 1,193만 원, BMW 차량(G)의 시세는 최대 약 4,670만 원으로 보이는 점, ④ 2019. 7.경 당시 피고 B은 D은행에 대하여는 3억 3,000만 원, 주식회사 H에 대하여는 약 3억 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312,340,000원의 각 대출채무를 가지고 있었던바, 위 채무액이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앞서 본 피고 B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는, 피고 B이 2018. 10.경 E를 인수하면서 E가 기존에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지급 자재대금채무를 10개월에 나누어 순차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E가 위 상환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 C는 자재공급을 중단하였고 E의 대표인 피고 B이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자재공급을 재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한층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는 기존에는 아무런 담보없이 E가 제시한 상환계획을 신뢰하여 자재를 공급하다가 2017. 7.경 피고 B으로부터 위 미지급 자재공급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받고 나아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개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점, ② 피고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기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점, ③ 피고 B이 E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I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C는 위 I로부터는 아무런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 ④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채무자인 피고 B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자금 융통 또는 사업 계속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오지애, 판사 김진하

별지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화성시 J, K건물 L동

[도로명주소] 화성시 M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스라브 지붕 25층

지하2층 23.522㎡

지하1층 51.61㎡

1층 227.63㎡

2층 412.174㎡

3층 412.174㎡

4층 412.174㎡

5층 412.174㎡

6층 412.174㎡

7층 412.174㎡

8층 412.174㎡

9층 412.174㎡

10층 412.174㎡

11층 412.174㎡

12층 412.174㎡

13층 412.174㎡

14층 412.174㎡

15층 412.174㎡

16층 412.174㎡

17층 412.174㎡

18층 412.174㎡

19층 412.174㎡

20층 412.174㎡

21층 412.174㎡

22층 412.174㎡

23층 412.174㎡

24층 412.174㎡

25층 289.9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화성시 J 대 60,712.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66.26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0,712.6분의 103.0075 끝.